

「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(Pay)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「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(Pay)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04.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: summerseol@gepa.kr
※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요망

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
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☎ 054-612-2971, (E-mail) summerseol@gepa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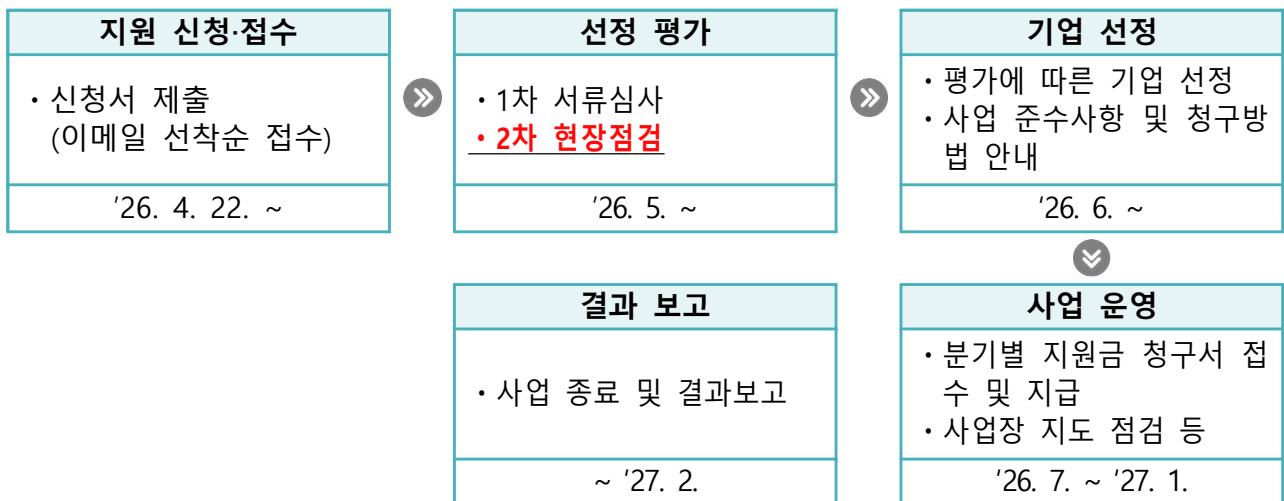
선정결과 통보

- 기업별 개별통보(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)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명	: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(Pay)
○ 사업내용	: (청년근로자)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지원 (참여기업)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
○ 신청기간	: 2026. 4. 22.(수) ~ 예산 소진 시 까지
○ 지원대상	: 2025. 10. 1. 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
○ 지원규모	: 청년근로자 65명, 중소기업 25개사 정도
○ 지원내용	: (청년근로자) 월 50만원, 최대 600만원 한도 (참여기업) 1개사 당 200만원, 최대 700만원 한도
○ 신청방법	: 이메일 접수(summerseol@gepa.kr)

2. 추진절차



*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목적

- 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 유도
-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 및 기업의 생산력 제고

4. 지원 자격 및 요건

□ (지원자격) 아래의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참여기업 자격 요건

- 포항시 소재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
*다수의 사업자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함

[지원대상]

- ① 제조업(사업 신청일 현재 포항시 동일 시·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)
 - ※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
 - ※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기업은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(건축법상) 건축물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인 기업
 - ※공장 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의 경우,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(하도급계약서 보유 시에 한함)
 - ※재무제표 상 '제조' 전업률이 50% 이상인 기업
- 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- 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- 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- 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- ⑥ 운수업(운송사업허가증, 등록증, 면허증 보유업체)
 - ※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
-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
- ⑧ 호텔업, 휴양 콘도미니엄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
 - ※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
- 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-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
 - ※단, 자동차 전문정비업,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
-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- ⑫ 소프트웨어업
 - ※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

[제외대상]

-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
-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및 상습 임금 체불 기업
-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(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)
- 6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기업
-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
- 기타 청년 근로자의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
-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

- ① 참여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*채용일 기준 만 18~39세 이하
-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입사자
*단,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 계약일 경우 지원 가능
- ③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

[제외대상]

-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25시간 미만인 청년 근로자
- 정부·지자체·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(수혜)자
- 참여 기업이 별도로 선발 및 관리하는 인턴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선발중인 자
*단,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재정 지원 사업은 중복 가능
-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중이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참여 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
*단,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 참여 가능
- *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 연계 현장연수(실습)또는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 기간 수료 후 채용(정규직 전환) 신청 가능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*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은 가능
- 2019~2025 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

- 지원요건

- ① 2025. 10. 1. 이후 사업 참여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완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
-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체결
*단,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 계약일 경우 가능
- ③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
*신청서 기재 사항과 기업 이행 사항이 다를 경우(낮은 임금 지급 등) 지원 제한

5. 지원내용

□ (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) **진흥원 → 청년 근로자**

- 지원대상: 2025. 10. 1. 이후 참여 기업에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신규 취업 청년 근로자(만 18세 ~ 39세)
 - 지원내용: 월 50만원(연 600만원) 지원금 지급
 - 지원규모: 65명 정도(1개사 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)
 - 지원방법
 -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하며,
 - 매 분기별 청년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
- *단, 청년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(휴직 기간 지원금 지급 불가)
- *청년근로자 명의의 개인 통장 거래 불가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□ (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) **진흥원 → 중소기업**

- 지원대상: 2025. 10. 1. 이후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(만 18세 ~ 39세)
- 지원내용: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시설 관련 경비 지원
 - 1~2명 신규 채용 한 경우: 1개사 당 200만원 한도
 - 3명 이상 신규 채용 한 경우: 1인당 100만원 추가(연 700만원 한도)
 - 인센티브 사용 항목

가 능 항 목	물 품	① 사내 휴게 시설 관련 비품 (소파, 의자, 냉·난방기, 음료기기, 관련 전자제품 등)
	공 사	① 상기 물품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수 및 인테리어 (화장실, 샤워실, 기숙사, 체육시설 보수 공사 등)
불 가 항 목		②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 개선 공사 (사무실 바닥 타일 및 벽지 개보수 등)
		① 작업 관련 물품(근무복, 작업복, 안전화 등) ② 사무용 기기, 생산 장비 등(집진시설, 향온흡습기, 선반, 폐수처리, 소방시설 등) ③ 사무실 및 사업장 전체 인테리어 ④ 일회성 및 소모성 물품 등 ⑤ 사무용 가구(책상, 의자, 회의용 테이블 등) ⑥ 유희시설 및 기기(게임기, 스크린 골프, 야구시설 등) ⑦ 사전 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 및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(예: 소방, 방범, 의료 시설, 회사 응접실 등)

- 지원규모: 25개사 정도
- 지원방법
 - 참여 청년 3개월 근무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(상시 접수)
 - *단, 참여 청년 최초 지원금 신청 후 지급 가능
 - *인센티브 항목 선 지출 이후 지원금 신청, 신청서 제출 전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
 - *운영 기관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. 다만, 참여 청년의 3개월 미만 근무 등 기업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전 경비를 사용했다라도 지원하지 않음.
 - 기업/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

6. 신청방법

(모집기간) 2026. 4. 22.(수) ~ 예산 소진 시 까지, 선착순 접수 및 지원

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summerseol@gepa.kr)

- 제출 서류를 아래 제출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-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
 - * 별도 확인 없이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, 접수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함

(제출서류)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참가 신청서	· [양식1] 참조
2	사업 활용 계획서	· [양식2] 참조
3	지원 사업 확인서	· [양식3] 참조
4	기업·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	· [양식4~7] 참조
5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
6	공장등록증 및 해당 업종 등록증	· 지원 대상 확인용
7	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	
8	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	
9	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· 제조업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추가 첨부
10	근로계약서 사본	· 입사일 및 근로시간 명시
11	근로자 주민등록 초본	· 최근 3개월 이내 발급
12	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	· 요청 시 별도 제출

7. 기업 선정

- (선정기준)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선착순 선정
- (현장점검) 신규 채용 근로자 근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, 신청 내용 사실 확인 등 진행
- (선정안내) 유선 또는 이메일 개별 통보

8. 지원금 청구 및 지급

- (지원금청구)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
 - 선정된 업체는 선정 후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
 - 제출 청구서류 검토 후 근로자/법인/사업주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
 - 3개월 단위 사후 신청, 익월 지급(1분기는 2분기와 함께 신청)
 - * 청구 후 지원금 지급 시점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 후 지급
 -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상시 지원금 신청서 접수

(제출서류)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지원금 지급 신청서	· [양식8] 참조
2	통장 사본	· 근로자,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
3	급여 이체 확인증	· 분기별 근로 확인용
4	인센티브 사업 결과보고서	·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신청 시에만 제출
5	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	· 요청 시 별도 제출

(기타사항)

- 지원자 일모아 시스템(www.ilmoa.go.kr) 등록 및 중복 수혜 방지
- 사업자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(연 1회 이상)
-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·변경 하는 경우, 참여 기업은

-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공문 형식 통보 필수
- 근로자가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, 지원금 미지급
 -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: 지원금 지급 불가
 - 1개월 이상 근무했으나, 퇴사 달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: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 - 중도 퇴사 등 근로자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, 변경 통보
 -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,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발생한 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은 환수 될 수 있음
 -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

9. 유의 사항

- 신청 기업은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 및 기 지급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
-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공고 예정

붙임 사업 신청 양식 각 1부. 끝.